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6. 5. 29.(금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

- 아 래 -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6. 5. 29.(금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6. 5. 28.(목)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6. 5. 28.(목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2026년 4월 24일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14층
주식회사 인이지 대표이사 최재식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윤수